

『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교통안전법」 및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 정비와 교통안전관련 유관기관·단체들의 주요업무 협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추진을 위한 「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」를 전부개정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
 - 현행 : 「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」
 - 개정 : 「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- 위원회 기능 및 구성원 상세조항 정비(안 제2조, 제3조)
- 위원장의 직무 등, 위원의 임기, 회의 관련 상세조항 정비 (안 제4조~ 제6조)
- 전문위원 관련 조항 신설(안 제7조)

- 위원의 해촉 및 간사와 서기 관련 상세조항 정비(안 제8조, 제9조)
-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 신설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교통안전법」, 「교통안전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은
 - 「교통안전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‘구미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’의 명칭을 ‘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’로 변경하고,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통안전관련 유관기관·단체들의 주요업무 협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추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,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